재판관에 대한 징계신청 사건 (2018년 10월 17일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 결정¹⁾)

1. 사건개요

동경 고등재판소 판사인 피신청인은 2014년 4월 23일, 트위터(인터넷을 이용하여 트위터라고 불리는 140문자 이내의 메시지 등을 게시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상의 본인 실명의 계정(이하, 본건 '계정'라 함)에 재판관 임명장에 있는 본인 사진과 함께 앞으로 자신의 나체사진과 속옷만 입은 상태의사진 등을 올리겠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 후 2016년 3월까지 본건 계정에서 밧줄로 묶인 상반신 탈의 상태의 남성사진을 첨부한 코멘트 등 2건의게시를 하였다. 동경 고등재판소 소장은 동년 6월 21일, 상기 3건의 게시는재판관의 품위와 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고 하급재판소 사무처리규칙 제21조2)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엄중주의를 주었다.

피신청인은 2017년 12월 13일 경, 게시자가 재판관이라는 것을 타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본건 계정에 특정 성범죄사건 판결을 열람할 수 있는 재판소 웹사이트 URL과 함께, '목이 졸려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의 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벽을 가진 남자', '그런 남자에게 무참히도 살해당한 17세의 여성'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동경 고등재판소 소장은 2008년 3월 15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상기 행위는 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하고, 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라 보고 하급재판소 사무처리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엄중주의를 주었다. 피신청인은 상기 게시가 문제되어 동경 고등재판소 소장으로부터 사정청취를 받았을 때, '유족 측을 상심하게 하여 죄송했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깊이 반성

¹⁾ 平成30年(2018年)10月17日 最高裁判所 大法廷 決定 平成30年(分)第1号.

²⁾ **하급재판소 사무처리규칙**(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平成24(2012)年3月12日 最高裁判所規則 第2号 最終改正) **제21조** 고등재판소 소장, 지방재판소 소장 및 가정재판소 소장은 소속의 재판소 감독에 따르는 재판소 직원에 대하여 사무취급 및 품행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다.

하고 있다.'고 하였다.

2018년 5월 17일 경, 피신청인은 반려견 반환청구 등에 관한 동경 고등재 판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보도기사의 웹사이트 주소를 본건 계정에서 공개 하면서, '아니? 당신, 이 개를 버렸잖아요? 3개월이나 방치해 두고는 …'이라는 말을 게시(이하, 본건 '트위터'라고 함)하였다. 본인 담당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본건 트위터 작성자가 재판관 직에 있다는 것을 불특정 다수자가 알수 있게 함으로써 반려견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진 당사자의 감정이 상하게되었고, 본건 트위터는 징계청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 본 판결

(1) 재판결과: 징계신청 인용, 재판관 전원일치

[주문] 피신청인을 계고한다.

(2) 판결이유:

1) 재판소법 제49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품행'의 의의

재판의 공정·중립은 재판 내지는 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재판관은 공정·중립적인 심판자로서 재판하는 것을 직책으로하는 자이다. 따라서 재판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는 물론, 직무를 떠난 사인으로서의 생활에서도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또, 재판소와 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행동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最高裁平成13年(分)第3号同年3月30日 大法廷決定·裁判集民事201号737頁參照).

재판소법 제49조3)도 재판관이 상기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품행'을 징계사유로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동조에서 말하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품행'이란 직무상의 행위인가, 순수히 사적(私的)인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거 나 재판의 공정을 의심하게 하는 언동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문하선)

2) 인터넷 정보네트워크 상의 게시행위의 재판소법 제49조 해당성

징계원인 사실에 따르면, 견주 본인이 공원에 두고 떠난 개를 보호·사육하던 자에게 그 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행동과 상반되는 견주의 과거행동을 지적하고 야유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놀람과 의문을 나타내면서 그 반환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보도하는 기사의 링크를 걸어 본건 트위터를 하였다. 본건 계정의 게시가 재판관인 피신청인에 의한 것임이 불특정 다수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인정된 증거에 따르면, 상기 보도기사는 오로지 반환소송의 피고 측 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본건 트위터에는 견주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을 포함한 그 사실관계와 견주 측의 사정에 대한 언급은 없고, 견주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어떻게 검토했는가에 관해서도 전혀나타나 있지 않다. 또, 본건 트위터에서의 표현이 단순히 상기 소송의 피고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거나, 보도기사의 요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도기사에도 본건 트위터에서 사용된 것 같은 표현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열람자의 통상적인 주의와 열람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본건 트위터는 피신청인이 그러한 소송의 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견주가 동경 고등재판소를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항의한 것, 본건 트위터의 삭제를

³⁾ **재판소법**(裁判所法, 昭和22(1947)年 法律 第59号) **제49조 (징계)** 재판관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품행이 있었을 때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으로써 징계받는다.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재판소가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과 본건 트위터 삭제 후에도 재판소가 피신청인에 주의를 줄 것을 주장한 것이 인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피신청인은 본인이 재판관의 직에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표면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사인인 견주의 제소가 부당하다고하는 일방적인 평가를 불특정다수의 열람자에게 공공연히 전달한 것이라 할수 있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재판관이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표면적이고 일방적인 정보나 이해에만 근거하여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국민에게 가지게 하고, 또 동시에 상기 원고의 제소를 야유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사인인 원고의 제소행위를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는 인식 내지 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원고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또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상기 행위는 재판소법 제49조가 말하는 '품위를 손상 시키는 품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원문하선)

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재판관에게도 보장되는 것이며 재판관도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그 자유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피신청인의 상기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재판관에게 허용되는 한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본건 징계 신청이 피신청인에게 트위터 게시를 그만두게 하는수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혹은 피신청인이 트위터 게시를 그만둘 것을 서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이전에 이루어진 본건 계정에서의 게시로 재판관의 품위와 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것을 이유로 2회에 걸친 엄중주의를 받았고, 특히 두 번째의 엄중주의는 소송에 관계한 사인의 감정을 손상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본건과 유사한 행위에 대한 것이었던 점, 더구나 엄중주의가 본건 트위터 게시사건의 겨우 2개월 전에 있었다는 점, 해당 엄중

주의를 받기 전에 있었던 사정청취에서, 피신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그러한 경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행위는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재판관분한법 제2조4)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을 계고하는 것으로 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대로 결정한다. 또, 재판관 山本庸幸, 재판관 林景一, 재판관 宮崎裕子의 보충의견이 있다.

재판관 山本庸幸, 재판관 林景一, 재판관 宮崎裕子의 보충의견

1) 피신청인은 본건에 앞선 2년여 동안 본건 계정에서 한 몇 가지 게시 내용에 대해 동경 고등재판소 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재판관의 품위와 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엄중주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두 번째의 엄중주의를 받은 게시는 특정한 성범죄에 관한 형사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해 행한 것으로 본건 트위터 이상으로 명백하고 현저하게 소송관계자(피해자 유족)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그 의미에서우리들은 이것을 본건 트위터보다도 악질적이고 재판관으로서 완전히 부적절하며, 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뼈아프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징계할만한 것이었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동경 고등재판소소관에 의한 사정청취에서 피신청인은 '유족 측에 상처를 주어 죄송했다 …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점에서 보아, 아마도 당시의 동경 고등재판소소장으로서는 이 반성을 전제로 엄중주의에 그친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할따름이다.

2)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하면 본건 계정에서 이 두 번째의 엄중주의에서 겨우 2개월여 밖에 경과하지 않은 때에 역시 특정 소송에 대해 소송관계

⁴⁾ **재판관분한법**(裁判官分限法, 昭和22(1947)年 法律 第127号) **제2조 (정계)** 재판관의 정계는 계고 또는 1만 엔이하의 과료로 한다.

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시를 다시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용서의 여지는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건 트위터와 두 번째의 엄중주의 사안의 그 악질성 비교는 접어두고라도 징계처분 상당성의 판단에 있어서 본건 트위터는 이른바 'the last straw'(낙타 등에 한계 이른 짐이 실려 있을 때는 보릿대 한 개만 더 올려도 무게를 이길 수 없어 등이 부러져버린다는 이야기에서, 임계치의 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 3) 또, 피신청인은 엄중주의 조치의 대상이 된 과거의 게시에 대해 일사부 재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의 처분이유는 과거의 행위 그 자체를 무한반복하였다는 것을 다시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 2회 받은 엄중주의와 특히 두 번째의 엄중주의를 받았을 때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여 경과한데 지나지 않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한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
- 4) 참고로 현역 재판관이 트위터를 비롯하여, SNS 기타의 표현수단으로 그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재판관은 그 직책상 품위를 유지하고 재판에 대해서는 공정·중립의 입장으로 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가장 요구되는 바이다. 본건처럼 재판관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표현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 내용, 표현의 선택에 있어서 특히 자신을 규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일정한 정도나 한도라는 것은 있지만, 재판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유로운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한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사례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재판관의 발신이 무용하게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만약을 위하여 첨언해 둔다.